

도면승인(변경)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25일
도면의 종류		[]건조검사 관련 도면 []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[]정기검사 관련 도면 []중간검사 관련 도면 []임시검사 관련 도면 []특별검사 관련 도면 []예비검사 관련 도면 []만재흡수선 관련 도면 []복원성 관련 도면			
신 청 인	성명(법인명)				
	주 소				
	(전화번호:) (전송:) (전자우편:)				
어 선	어선의 명칭		어선번호 또는 건조번호		
	어업의 종류		총 톤 수		
	배의 길의		선 질		
어선용품	품 명		규 격		
	형 식				
비 고					

「어선법 시행규칙」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(변경)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
한 국 선 급 회 장 귀하

첨부서류	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	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□ 도면승인 신청

- 건조검사, 별도건조검사, 정기검사, 중간검사, 특별검사,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(「어선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합니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